

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

□ 추진배경

- 기업은 적절한 인권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·완화할 수 있고,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,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
- 이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한편,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

□ 주요경과

- '23. 06. 29 :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
- '23. 06. 30 ~ 08. 08: 주요사업 선정 및 지표개발
- '23. 08. 10 : 인권영향평가 지표교육 실시(대상: 평가 대상 사업담당자 등)
- '23. 08. 29 :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
- '23. 09. 15 : 최종보고서 작성 및 조치사항 도출

□ 주요내용

-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분야로 나누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실시
- (기관운영 체크리스트)
 -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내부 자체평가, 관계자 인터뷰, 조직 및 업무 현황 조사 등을 통해 11개 분야 37개 항목 189개 지표 확정 및 평가
- (주요사업 체크리스트)
 -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공사의 대내외환경 및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사업, 다양한 이해관계자, 지역 이슈 연계성, 파급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“금융투자지원사업”을 평가(1개 사업, 4개 항목, 14개 지표)
 - “금융투자지원사업”은 이용자, 지역주민, 협력회사,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, 그 파급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, 사업의 대표성과 시의성이 높아 인권영향평

가 대상 주요사업으로 선정

□ 분야별 평가결과

○ (기관운영) 달성률 94.5% (256점 중 242점 획득)

No.	분야	지표수	결과				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41	38	2	0	0	1
2	고용상의 비차별	17	16	1	0	0	0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6	2	0	0	0	14
4	강제 노동의 금지	11	9	0	0	0	2
5	아동노동의 금지	14	0	0	0	0	14
6	산업안전 보장	17	10	3	0	0	4
7	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10	5	1	0	0	4
8	현지주민의 인권보호	10	0	0	0	0	10
9	환경권 보장	18	10	0	1	0	7
10	소비자 인권 보호	15	10	0	0	0	5
11	직장 내 인권보호	20	16	3	1	0	0
	총합	189	116	10	2	0	61

○ (기관운영) 달성률 100% (28점 중 28점 획득)

No.	분야	지표수	결과				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1	사업의 인권체제	3	3	0	0	0	0
2	투자의뢰사의 인권보호	5	5	0	0	0	0
3	공정운영	3	3	0	0	0	0
4	개인정보보호 및 적재산권보호	3	3	0	0	0	0
	총합	14	14	0	0	0	0

□ 중대성 평가 결과

- 중대성 평가란 인권영향평가의 일부로,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‘주요 인권이슈’ 를 선정하는 절차를 말함. 이행수준, 영향심각도,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함
- 중대성 평가 결과, 최종 합계 점수가 높은 ① 구제절차 실효성 관리, ② 산업안전 보장, ③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요 인권 이슈로 지정하고 향후 개선 과제로 도출함



□ 평가위원 주요 권고의견

No.	이슈	권고의견
1	인권경영 체계 구제절차 실효성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내규를 갖추고 있으며, 현재 운영 중임 -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인권경영의 체계를 확고히하기 위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홍보하고, 구제조치 및 이행결과 통지 등 절차를 검증할 것을 권고함
2	공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관리체계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고층 건물에 입주한 사무업무 직군이라는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공사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연계될 필요가 있음 -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배임, 찢림, 끼임,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유해·위험을 파악하고 요인별 통제방안을 계획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함
3	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조치에 대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